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05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광규택 · 조승환 · 박지원
김용태 · 유상범 · 신성범
김상훈 · 강대식 · 배준영
강승규 · 조지연 · 강명구
서천호 · 최은석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경비 보조 등) <신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이 경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u>②</u> · <u>③</u> (생 략)	<u>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u>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